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중소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활동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대기업(모기업)이 함께 지원합니다.



사업 규모

정부 지원 예산액 100억원 (건설업5억원포함)

사업 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

지역중소기업 기준



▶ 최근 2년간 모기업과 협력관계 및 거래가 없는 기업

매칭지원

지원한도

컨설팅 과제



협력업체 1개소 당 최대 2,000만원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안전보건활동 과제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주요 지원과제

컨설팅 과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안전보건진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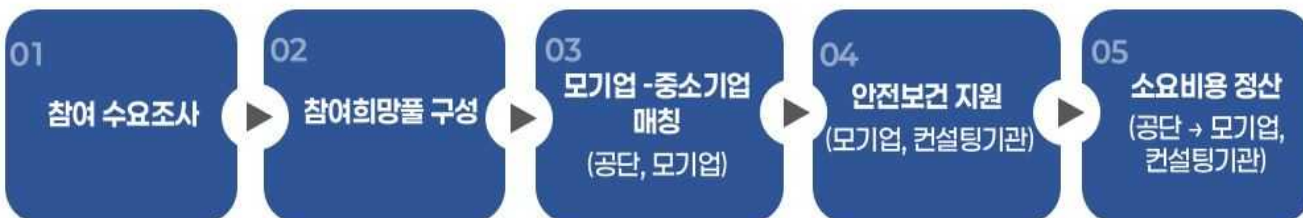
안전보건활동 과제



안전보건 세미나 및 캠페인
안전보건 물품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외국인노동자 활동지원 등

추진절차

※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음(정부와 모기업이 전액 부담)



사업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 상생협력담당 : 052-7030-631, 632, 633



고용노동부

상생협력담당

안전보건공단



<첨부 1> 컨설팅 과제 매칭지원 세부내용

컨설팅 매칭지원 과제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준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

- *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재해발생 및 위험공정 일부(모기업 선정)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제공<필수>

2.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2-1. 사내 집중형(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

2-2. 사외 집중형(일반형)

- 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 등
③ 위험성평가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 ④ 위험성평가 연계 TBM 활용법 등

※ 2-1. 사내 집중형(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의 경우 모기업 담당자 필수 참석*

- * (위험성평가 필수참여 5단계) ① 사전 준비회의,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④ 감소대책 수립, ⑤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공유·검토

※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현장점검과 절차별 진단 및 대책을 제시

※ 전 공정(사고발생 공정포함)의 30% 이상(모기업 선정)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제공<필수>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매뉴얼/절차서/지침서 등 제공 조건)

- (KOSHA-MS) ① 경영자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④ 비상조치계획 수립, 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⑥ 평가 및 개선 등 인증 기준 요구사항 반드시 포함
- (ISO45001) ① 조직상황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 ② 리더십 및 근로자 참여 확보, ③ 위험 및 기획관리 계획 수립, ④ 운영 관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⑤ 성과평가 및 지속개선 등 인증기준 요구사항 반드시 포함

※ ▲(지원조건)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KOSHA-MS 실태심사 또는 ISO45001 인증심사를 10월말까지 완료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기준 협력업체 당 최대 600만원

4. 안전보건진단 ※ 공단 진단업무 가이드라인 참고

- ① 주제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
② 지원분야 : 안전, 보건 ③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④ 중복지원 제외 : ① 안전 분야 또는 체계 구축 컨설팅 과제 참여 시 → 안전진단 참여 불가
② 보건 분야 컨설팅과제 참여 시 → 보건진단 참여 불가
⑤ 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공단 제외
⑥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 안전보건진단 추진계획(내용, 일정, 참여 진단기관 등 자율양식)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기준 협력업체 당 최대 600만원

5.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 협의체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율 주제 지원(협력업체 요구 시)

※ (중빙제출) 협력업체 요구사항이 기록된 회의록 등 제출 시 승인(권역별 심사위원회)

※ (중복지원 배제) 과제 1번~5번 중복지원 불가, <단 5번 과제는 1~4번 과제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첨부 2>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 2) 지원대상 : 세미나에 참여한 모기업협력업체 CEO, 근로자 등 전부(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 등 반드시 포함)
- 3) 예산지원 범위 : ① 장소 임차료, ② 강사료(여비 포함), ③ 안전보건 홍보물(참석자 당 1개), ④ 세미나 물품(현수막,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임차>, 다과, 필기류 등) 등
- 4) 지원비율 : 협력 형태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금 기준>

2. 안전보건 캠페인

- 1) 주제: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관련 등
- 2) 지원대상 : 캠페인에 참여한 모기업협력업체 CEO, 근로자 등 전부(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 등 반드시 포함)
- 3) 예산지원 범위: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 4) 지원비율: 협력 형태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금 기준>

3. 안전보건 물품

《 지원 일반조건 》

- ▶ 안전보건 물품이 협력업체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스마트·AI형태 포함 지원 가능)
- ▶ 모기업의 시설, 설비 또는 감시용 목적 등의 안전보건 물품 지원 불가*
* (예시) 사내 협력업체의 작업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모기업 건물 벽면에 설치한 AI카메라
- ▶ 생산 및 작업관련 기계·설비는 지원 불가(지게차, 고소작업대, 동력식 컨베이어 등)
- ▶ 안전장치 등 지원 시 기계·설비의 소유가 협력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 (지원품목)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정하는 품목

[가능품목 예시]

- 1)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절삭베임장갑, 방독마스크, 보호복, 보안경, 귀마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지급 대상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는 사내 협력업체 지원 제외
- 2) 측정장비: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
- 3) 끼임방지: 산업용로봇 등 안전장치, 잠금장치(LOTO-Lock Out, Tag Out) 등
- 4) 추락방지: 추락방지용 안전매트, 안전대부착설비, K-사다리 등
- 5) 충돌방지: 건설기계 또는 화물자동차의 충돌 방지용 후방 센서 등
- 6) 폭염예방설비 : 냉풍기,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등
- 7) 기타 : 비상용 응급구조키트(구급함), 자동제세동기(AED) 등

나. (지원대상) 사업 참여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근로자(모기업 지원 제외)

다. (지원결정) 협력업체 지원품목·수량 등은 권역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신청 품목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정(중복지원 제외 필수 확인)

4.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 2)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3) 제작범위 : 사업 참여 협력업체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모기업 지원 제외)
- 4) 예산지원범위 : 자료 제작·배포 비용 등(구매품 지원 가능)

5. 안전보건교육 지원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등(내부 집합교육 포함)
* 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 의무교육은 지원 제외(예시: 근로자 정기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등)
- 2) 지원대상 : 사업 참여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대표 및 근로자(모기업 지원 제외)
- 3) 예산지원범위 : ① 교육비, ② 교육출장 여비, ③ 내부 집합교육 시 강사료*(여비포함) 등
* 단, 외부 강사료 지원의 경우 모기업 소속 내부 직원은 지원 불가

6.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사내협력업체 지원불가>

- 1) 업무범위 : 전문기관* 관리규정 제4조[위탁업무]①항~⑤항(고용노동부예규 제231호 준용, 시행 2025.1.1.)
* 계약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 2) 지원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비대상 사업장 중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 3) 예산 지원범위 : 위탁계약일~10월말까지의 활동 내용 정산

7. 외국인노동자 활동지원

- 1) 지원대상 :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참여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 모기업 지원 제외
- 2) 예산지원범위 : ①안전보건자료 번역 비용, ②통역비, ③외국인노동자 전용 교육시스템 운용 비용 (설치,구독료 등) 등

8. 근로자 휴게시설<사내 협력업체 지원불가>

- 1) 지원종류 : 컨테이너 하우스(조립식 포함), 휴게시설·비품(냉·난방기, 소파, 테이블)
* 모기업의 구매 제품이 조달청 등록(유사)제품 대비 과하게 높은 경우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 2)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 3)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 설치계획(설치 예정 장소 명단 및 주소, 내부 구성 품목 등 자율 양식)
- 지원기업의 공정별 근로자수 현황

9.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사내 협력업체 지원불가>

- 1)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 2) 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10.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 요청사항 포함)

- 1)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2) 지원조건 : 모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협력업체 건의 요청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해당 내용이 작성된 협의체 회의록 등
- 3) 지원 결정 : 공단의 사전 승인 후 지원 가능

- ▲ 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료 등 통보(공단→신청 모기업)
- ▲ 1~9번 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항목)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 지원 가능